

부속서 IV

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한국

1. 이 양허표는 제9.5조(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당사자의 자연인¹의 한국 영역으로의 일시적인 입국 또는 한국 영역에서의 일시적인 체류에 관한 한국의 약속을 규정한다.
2. 한국은 다음의 약속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자연인의 한국 영역으로의 일시적인 입국 또는 한국 영역에서의 일시적인 체류에 대하여 약속 안함을 유지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아래에 명시된 각 범주별로 필수 비자 요건 및 그러한 비자에 따른 일시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부가되는 조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 제1장(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 제18장(제도 규정), 제9.9조(분쟁해결)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제19장(분쟁해결), 그리고 제20장(최종 규정)을 제외하고, 제8장(서비스 무역)의 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국의 출입국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범주내용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함)
A. 상용 방문자	
<u>정의:</u>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인: (i)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그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	A에 정의된 자연인의 일시 입국 및 일시 체류는 90일의 기간으로 제한됨.

¹ 이 양허표의 목적상, 당사자의 자연인의 정의는 GATS 제28조에 규정된 바와 같다.

범주내용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함)
<p>하는 인으로, 그러한 판매가 직접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으며, 한국 영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한국 내에 소재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인</p> <p>(ii) 상품의 판매를 협상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을 하려 하는 인으로, 그러한 협상이 일반 대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않고, 한국 영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한국 내에 소재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인, 또는</p> <p>(iii) B(i) 또는 B(ii) 범주의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으로, 한국에 투자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입국을 하려 하고 한국에 대표사무소, 지점 또는 자회사가 없으며 한국 영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한국 내에 소재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인</p>	
B. 기업 내 전근자	
<u>정의:</u> 한국에 설립된 자회사, 지점 ² 또는 지정된	B에 정의된 자연인의 일시 입국 및 일시 체류

² 이 양허표의 목적상, “지점”은 동일한 조직의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로 정의되며,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한 모회사를 대표하는 포괄적 권한을 가진 피고용인을 보유한다.

범주내용	조건 및 제한 (채류 기간을 포함함)
<p>계열사³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이며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인:</p> <p>(i) 임원 - 조직 내에서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만을 받는 자연인. 임원은 조직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들의 실제 공급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않음.</p> <p>(ii) 고위 관리자 - 조직 내에서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 해고 또는 다른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연인. 고위관리자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않음.</p>	<p>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제한되며, 신청인에 의하여 위의 조건이 여전히 충족되는 경우 연장될 수 있음.</p> <p>그 자연인은 수적 상한, 수적 제한, 그리고 경제적 수요심사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p>

³ 이 양허표의 목적상, “지정된 계열사”는 동일한 모기업에 의하여 소유 또는 관리되는 두 개의 자회사 중 하나, 또는 파트너십, 회사 또는 다른 법적 실체의 파트너로 두 법적 실체의 각각의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두 법적 실체 각각의 총투자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동일한 주주단체에 의하여 소유 또는 관리되는 두개의 법적 실체 중 하나로 정의된다.

범주내용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함)
(iii) 전문가 -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관한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한 자연인.	
C. 계약서비스 공급자- 법인의 피고용인	
<p><u>정의:</u> 한국에 상업적 주채를 하지 않은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자연인.</p>	<p>C에 정의된 자연인의 일시 입국 및 일시 체류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그 계약 기간으로 제한됨.</p> <p>이러한 인의 일시 입국 및 일시 체류는 1년 기간으로 제한되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될 수 있음.</p> <p>그 자연인은 한국의 법, 규정 또는 요구 조건 및 워싱턴 어코드, 엔지니어링 모빌리티 포럼 국제 등록 전문 엔지니어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엔지니어와 같은 관련 국제기구의 인정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전문적 자격과 전문적 자격을 갖춘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해야 함.</p> <p>그 자연인이 고용된 그 법인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한국에 설립된 법인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해야 함. 그 계약은 한국의 법과 규정</p>

범주내용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함)
	<p>을 준수함.</p> <p>그 자연인은 한국에 소재한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을 것이 요구됨.</p> <p>그 자연인은 수적 상한, 수적 제한 및 경제적 수요심사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p> <p>입국을 하려 하는 자연인은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으로서 그 법인의 피고용인이어야 함.</p> <p>계약은 한국의 직업적 명칭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함이 없이, 다음의 서비스 공급행위 또는 하위 분야에서 취득될 것이 요구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당사자에 소재한 그 자연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장비 또는 기계를 구입하는 한국 내 법인을 위한 건설 및 발전 장비 외의 산업 장비 또는 기계의 설치, 관리 또는 수리에 관련된 서비스 •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생명공학, 나노기술, 디지털 전자공학 및 환경 산업에 적용되는 자연과학에 관한 기술적 지식 또는 기술에 관련된 자문 서비스 • 회원 계약을 통한 한국의 회계법인 또는 사무소에 대한 외국의 회계 표준 및 감사, 공인회계사 연수, 감사 기술의 이전 및 회계, 감사와 부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범주내용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함)
	<p>교환을 위한 자문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계약의 형태로 한국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 협업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 서비스 • 경영 컨설팅 서비스 <p>다음 서비스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 • 소프트웨어 연구 및 개발 기반 이행 서비스 • 자료 관리 서비스 • 자료 시스템 서비스 • 특수 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

4. 투명성을 목적으로,

가. 일시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가된 자연인은 출입국 법과 규정, 노동법과 규정을 포함하여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나. 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관한 한국의 약속은 노사 분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